접 수	의안과 - (20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 년 02 월 16 일

청 원 인

성 명 : 윤시원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윤시원
건 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 년, 월, 일	2016년 2월 15 일

소개의견

청원인 윤시원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대학민국청소년의회는 2016년 2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중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관련 법률 개정안』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의 수 증가와 그에 포함되는 변호사, 판사 등의 자격과 경력요구, 감정위원의무 연고성을 법 개정에 추가하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청원인이 제안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문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과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단, 감정단원은 조사하게 될 의료기관과 아무런 인연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뇌물 수수의 증거가 적발된 조사, 감사위원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의료분쟁'은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이슈이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병원이 다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관련 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관리 하지만 현재 중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는 관련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등의 권한 때문인데, 이 제도로 인해 중재원의 여러 문제점들이 수면위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

2. 주요골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 20조 1항에 조정위원의 구성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상 200명 이내로 구성원을 증가시키고, 중재위원의 자격 부분에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과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한다. 제 25조 의료기관을 조사할 감정단원에는 조사할 의료기관과 아무런 인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을 배치해야 함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제53조에 3항을 추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개정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과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u>단, 감정단원은 조사하게 될 의료기관과 아무런 인연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u>**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증거가 적발된 조사, 감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청원인 성명 :윤시원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 성명 :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